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22

제출년월일 : 2003. .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개정이유

○ 공설(공원)묘지의 수급관리 및 형평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일정기간 관내에 거주한 자로 제한하고 공설공원묘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부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9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사망자 또는 상주)로 제한함. (안 제6조)

나. 공설공원묘지를 민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안 제17조 제2항 신설)

▢ 개정조례안 : 별 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 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 첨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 2003. 4. 1 ~ 4. 21 (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공설묘지"를 "장사시설"로 한다.

제1조중 "공설묘지(이하 "묘지"라 한다)"를 "장사시설"로 한다.

제2조제3호중 "일반공설묘지"를 "공설묘지"로 하고,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무연분묘묘역"이라 함은 관내에서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발생된 무연분묘의 유골을 화장하여 매장하는 묘역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장사시설의 사용은 망인의 사망일 현재 안산시에 90일 이상 계속하여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거주한 자(사망자 또는 상주)에 한한다.

제6조제2항의 본문중 "일반공설묘지"를 "공설묘지"로 하고, 동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의 제목 "묘지관리자"를 "묘지관리"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은 공설공원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6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환경위생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환경위생과장 정 내 관
	담당·팀장 직위·성명	위생담당 유 현
	담 당 자 성명·전화	유 정 시 (행정 223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안산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공설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 ---------- ----장사시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일반공설묘지"라 함은 과거에 설치한 공동묘지 형태의 단지 조성을 하지 않은 구역의 묘지를 말하며 토지형질변경의 허가를 받아 공설공원묘지 형태로 재조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묘지를 말한다. 4. (생 략) 5. "무연분묘묘역"이라 함은 안산시 도시개발 로 발생된 무연분묘를 매장한 묘역으로 향후 발생될 무연분묘의 유골을 매장할 묘역을 말한다. 6. (생 략)	제2조(정의)---------- ---------- 1. ~ 2. (현행과 같음) 3. "공설묘지"---------- ---------- ---------- ---------- ---------- 4. (현행과 같음) 5. "무연분묘묘역"이라 함은 관내에서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발생된 무연분묘의 유골을 화장하여 매장하는 묘역을 말한다. 6. (현행과 같음)
제3조(묘지의 구분) 묘지는 공설공원묘지와 일반공설묘지로 구분한다	〈삭 제〉
제6조(사용자의 자격 및 제한) ①장사시설은 안산시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상주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산시 관할구역 외에 주소를 가진 자와 외국인에 대하여도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의 자격 및 제한) ①장사시설의 사용은 망인의 사망일 현재 안산시에 90일 이상 계속하여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거주한 자(사망자 또는 상주)에 한한다.------- ----------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②시장은 묘지수급 및 관리를 위하여 미성년자, 사산아 및 개장한 유골을 공설공원묘지 및 일반공설묘지에 매장하지 못하도록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기 사망하여 매장된 유골을 개장하여 합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공설묘지---------- ---------- 〈단서 삭제〉
제17조(묘지관리자) 묘지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관리자를 두되 그 보수와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묘지관리) ① (현행 본문과 같음)
〈신 설〉	②시장은 공설공원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